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1월 2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지역투자팀 김미애 팀장(044-203-4450), 이헌두(4451)·박혜미(4454)·이화옥 사무관(4452)
지역경제총괄과 박정욱 과장(044-203-4410), 김상효 사무관(4413)

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편

- 설비투자 지원 강화, 신·증설투자 지원 확대,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방투자 지원 등 -
- 산업부, 제1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제도 개편내용 발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최근 어려운 **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**하고 **양질의 일자리를 창출**하기 위해 **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편**한다고 발표함

○ 금번 제도 개편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, 지방 신·증설투자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**보조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,**

-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U턴기업 확장이전 등 **지원범위 확대**와 더불어, 기업의 투자사업장 기준 지원 등을 통해 **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됨**

○ 산업부는 **1.28(화)**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지역위, 17개 시·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1차 **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**하여 이 같은 **주요 개편내용에 대해 발표**함

<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개요 >

◈ 일시 / 장소 : '13. 1. 28(화) 14:00~16:00 / 산업부 중회의실(551호)

◈ 참석자 : (산업부) 산업기반실장, 지역경제정책관, 지역경제총괄과장, 지역투자팀장, (지역위) 정책총괄국장, 정책총괄과장, (지자체) 17개 시·도 정책기획관 및 경제담당국장, (유관기관) 산업연구원, 지역발전연구원 등 총 25명 내외

【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 주요 내용】

1 먼저,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**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조정**함

○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**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,**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고용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**입지보조금은 보조비율을 축소**

○ 다만, 지자체의 투자유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**'18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비율을 조정**할 예정이며, 이를 통해 **장기적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 신·증설 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**됨

<'14~'18년 지방투자 보조비율 조정계획(일반지역·중소기업 기준)**>**

(단위 : %)

구 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
입지보조	35	30	30	30	25	25
설비투자보조	10	12	12	12	13	13

2 **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** 현제도상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, 앞으로는 **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준하여 보조금을 지원**함

○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내에 백업라인(Backup Line) 구축 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향후 지난해 개성공단 잠정 폐쇄와 같은 **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생산활동 영위가 가능**해짐

3 이번 제도개편으로 **지방 신·증설투자 지원대상 업종**이 늘어나고 **업종제한에 대한 합리적 지원기준**이 마련되어, 향후 지자체의 기업투자 유치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

○ 기업이 **지방에 신·증설 투자**하는 경우, 보조금을 지원이 가능한 **지역집중유치업종이 지자체별 4개에서 6개로 확대**됨

- 이를 통해 **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이 강화**되고, 보조금의 **지역편중 현상도 보다 완화**될 것으로 예상됨

○ 또한, 그간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제한업종*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수혜가 불가능하였으나, 앞으로는 **투자사업장 영위업종을 기준으로 지원**하기로 함

* 보조금 지원 제한업종 : 부동산업, 건설업, 소비성 서비스업

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**U턴기업**의 [illegible] 확대되고, **비수도권 혁신 산업단지**에 대한 지원도 강화됨

○ **국내사업장이 있는 U턴기업이**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후 사업장을 통합하여 국내복귀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지고,

○ **구조고도화 대상단지 투자기업**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우대됨

5 또한, 근로환경개선시설 지원 내용을 조정하고, 임대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**일부 제도를 보완**함

○ 근로환경개선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 **어린이집 시설비 지원**은 **고용부의 직장어린이집 제도로 일원화**하고,

○ 기업의 투자연속성 유지에 취약한 **임대사업장에 대한 입지 지원은 중단**하고, 자가 입지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함

□ 이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은 **1월 29일부로 개정·시행**되며, 지자체는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예정임

□ 산업부 **정만기 산업기반실장**은 "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**기업의 투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**하다."고 강조하며,

○ "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**지속적으로 투자여건을 개선**해나갈 예정이며, 금번 제도개편이 기업의 **지역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**가 되길 바란다."고 밝힘

□ 한편, 이번 지역경제 실무협의회에서는 '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'에 포함되는 **'시·도 발전계획'에 대한 각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점검**하였음

○ 특히 서울·부산·광주·경북에서 지금까지 작성된 '시·도 발전계획'에 대해 발표하였으며, 각 지자체의 상호 정보공유와 지역발전위원회, 산업연구원 등의 컨설팅이 이루어졌음

○ 산업부와 지역위는 상반기중 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며, 이를 위해 동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의 시·도 발전계획 수립을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팀 이헌두 사무관(☎ 044-203-44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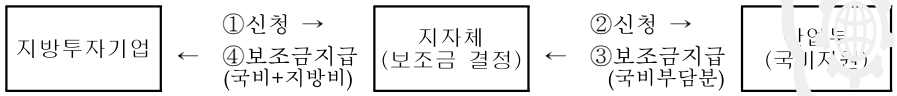
□ **(제도개요) 지방투자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**를 위해 지자체가 유치한 **지방투자기업*에 보조금 지원**

*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('04), 지방 신·증설투자('11), 국내 복귀기업('12)

○ **(지원내용) 입지·설비투자**에 대해 **지역별·기업규모별**로 지원비율 및 국비·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 지원

* 기업의 투자액에 대해 입지 35%, 설비투자 10%를 국비·지방비 70:30으로 지원('13년 일반지역·중소기업 기준)

○ **(지원절차)** 지자체가 유치하여 신청한 기업에 대해 산업부가 **지원타당성을 평가**하고, **심의위원회 의결**을 거쳐 지원 결정



□ **(추진성과)** 보조금 제도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여 **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**한 것으로 평가

○ 최근 5년간('09~'13년) 420개 기업에 5,009억원을 지원하여, **9조 1,547억원의 투자**와 **23,902명의 신규 고용창출**을 유도

○ 보조금 지원이 **기업의 지방투자 결정시 주요 요인** 중 하나

* 지방이전시 가장 도움이 된 지원서비스('13년, 대한상의) : 보조금 지원 41.2%

○ **지자체**는 입지조건 등 불리한 여건속에서 **투자유치 활동의 주요 수단**으로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

참고 2 '14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

□ 2013년도

분류 (매칭비율)	이전기업·U턴기업 지원			신증설기업 지원		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대기업(신설)	중견기업	중소기업
일반지역 (70:30)	입지(-) 투자(5%)	입지(15%) 투자(7%)	입지(35%) 투자(10%)	투자(5%)	투자(7%)	투자(10%)
수도권 인접지역 (50:50)	입지(-) 투자(3%)	입지(-) 투자(5%)	입지(10%) 투자(7%)	투자(3%)	투자(5%)	투자(7%)
지원 우대지역 (80:20)	입지(-) 투자(7%)	입지(25%) 투자(15%)	입지(45%) 투자(20%)	투자(7%)	투자(15%)	투자(20%)

* 수도권 인접지역 : 조특법 제63조의 2에 따라 정한 기초지자체(9개 시군)

* 지원우대지역 : 기업도시·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, 세종특별자치시, 낙후지역(70개시군)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및 지원실적 저조 광역 지자체

□ 2014년도

분류 (매칭비율)	이전기업·U턴기업·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			신증설기업 지원		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대기업(신설)	중견기업	중소기업
일반지역 (65:35)	입지(-) 투자(6%)	입지(10%) 투자(9%)	입지(30%) 투자(12%)	투자(6%)	투자(9%)	투자(12%)
수도권 인접지역 (45:55)	입지(-) 투자(4%)	입지(-) 투자(6%)	입지(9%) 투자(9%)	투자(4%)	투자(6%)	투자(9%)
지원 우대지역 (75:25)	입지(-) 투자(9%)	입지(20%) 투자(17%)	입지(40%) 투자(22%)	투자(9%)	투자(17%)	투자(22%)

* 수도권 인접지역 : 조특법 제63조의 2에 따라 정한 기초지자체(9개 시군)

* 지원우대지역 : 기업도시·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, 세종특별자치시, 낙후지역(70개시군)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및 지원실적 저조 광역 지자체